



In depth

A look at current financial reporting issues

Release Date: 17 June 2019

INT 2019-02

IFRS 16, 'Leases' - interaction with other standards

At a glance

IFRS 16에 따라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계상하며 거의 모든 리스계약을 재무상태표에 인식해야 합니다.

총자산과 총부채를 함께 증가시키는 것이 IFRS 16을 최초도입 할 때 가장 명백한 영향이지만, IFRS 16이 다른 IFRS 기준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IFRS 16의 지침으로는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영향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업이 다음 기준서들을 적용할 때 IFRS 16 도입이 미칠 영향을 포함하여 IFRS 16이 적용으로 인한 결과들을 살펴봅니다.

- IAS 16, '유형자산';
- IAS 36, '자산손상';
- IFRS 3, '사업결합';
- IFRS 9, '금융상품';
- IAS 12, '법인세';
- IAS 37,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IFRS 8, '영업부문';
- IAS 21, '환율변동효과'.

IFRS 16 과 IAS 16 의 상호작용

리스기간의 결정은 IFRS 16 을 적용함에 있어 중요한 판단입니다. 리스기간을 결정할 때 기업은 연장선택권 또는 종료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기업의 리스부채 및 관련 사용권자산 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취소 가능하거나 연장 가능한 리스의 리스 기간을 결정할 때 계약 종료에 따른 지급 금액 이외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고려 여부가 2019 년 11 월 IFRS 해석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되었습니다. 해석위원회는 기업이 IFRS 16 의 문단 B34 를 적용할 때 계약 종료에 따른 지급 금액뿐만 아니라 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해야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PwC Observation:

리스 기간을 결정할 때 수행된 (또는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의적인 리스개량이 고려되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리스개량은 리스의 연장 또는 종료선택권이 행사될 때 리스이용자에게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스 계약이 종료된 날짜 이후로 유의적인 리스개량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는 리스개량의 내용 연수가 끝나기 전에 리스 계약이 종료되면 기업에게 약간을 초과하는 불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스기간을 결정할 때 리스개량의 폐기 또는 해체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의적인 리스개량은 IFRS 16에 따른 리스기간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한, 리스기간에 대한 예상은 IAS 16에 따른 리스개량의 회계처리에 의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AS 16 문단 56 (d)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 관련 리스계약의 만료일 등 자산의 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IAS 16 문단 57은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자산으로부터 효용이 기대되는 기간으로 정의하며 IFRS 16은 선택권이 행사될 '상당히 확실'한 기간을 리스기간에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연장선택권의 행사가 상당히 확실하지는 않지만 행사가 기대되는 것으로 결론 내리는 것이 가능한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리스개량의 내용연수 (감가상각기간)가 IFRS 16에 따른 리스기간보다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9년 11월, IFRS 해석위원회는 계약 해지시 회수불가능한 리스개량의 내용연수가 리스기간으로 제한되는지를 논의했습니다. 질의의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 해석위원회는 많은 경우 기업이 리스기간 동안에만 리스개량의 효익을 얻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PwC Observation:

리스기간 종료시에 리스개량을 실무적이고 경제적으로 해체 및 재배치할 수 있는 경우 리스개량의 내용연수가 관련 리스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IFRS 16과 IAS 36의 상호작용

어느 수준에서 테스트를 수행합니까?

개별 자산이 다른 자산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 유입을 발생시키는 경우 개별 자산 수준에서 손상을 식별해야 합니다. 사용권자산의 회수 가능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손상 검사는 사용권자산이 속하는 현금 창출 단위 ('CGU') 수준으로 수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권자산은 다른 자산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 유입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손상 테스트는 CGU 수준에서 수행합니다. 한 가지 예외는 전대리스 된 자산 일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른 자산과 거의 독립적인 현금 유입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일반적인 예외는 IAS 40, '투자부동산'에 따라 회계처리되는 리스로 제공된 투자부동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경우 리스로 제공된 투자부동산은 다른 자산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 유입(전대리스의 임차인으로부터) 될 수 있는 사용권자산이므로 이 자산은 개별 자산 수준에서 손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된 사용권자산은 IAS 40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으며, 공정가치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 IAS 36에 따라 손상에 대해 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리스이용자가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IAS 40의 투자부동산 정의를 충족하는 사용권자산에도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해야 합니다.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이 기업이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자산 유형에 속하는 경우 IAS 16의 재평가모형을 사용하여 사용권자산을 측정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테스트를 수행합니까?

IAS 36의 일반적인 요구 사항은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자산에 대해 손상 테스트를 수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사용권자산이 포함됩니다. 사용권자산이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비한정내용연수 무형자산 또는 아직 사용 가능하지 않은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CGU의 일부인 경우 매년 손상 검사가 요구됩니다.

PwC Observation:

사용권자산이 CGU의 유의적인 구성 요소가 아닌 경우 시장 요인으로 인한 사용권자산의 공정가치 하락은 CGU의 손상 지표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까?

회수가능액

IAS 36 은 자산 또는 CGU 의 장부금액을 사용가치("VIU")와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FVLCD") 중 더 많은 금액과 비교합니다.

'더 많은 금액'의 의미는 VIU 기준으로 손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FVLCD 도 테스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FVLCD 기준으로 자산이나 CGU 가 손상되었음이 나타나는 경우 VIU 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채

VIU를 산정할 때 사용권자산이 CGU에 포함되는 반면, 관련 리스부채는 재무활동의 한 형태이므로 모든 재무현금흐름이 VIU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것처럼 CGU평가에도 리스부채가 제외되어야 합니다[IAS 36 문단 50 (a)].

상황에 따라서는 부채를 관련 자산에서 분리할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구매자가 부채없이 자산이나 사업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2016년에 IFRIC은 이러한 명백한 상충을 고려했으며, IAS 36에 따르면 인식된 부채의 장부 금액을 CGU의 장부 금액뿐만 아니라 부채와 관련된 현금 유출을 제외하고 산정한 VIU 금액에서도 차감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CGU에 리스부채를 포함시키는 것이 VIU 테스트에 중립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PwC Observation:

VIU는 FVLCD에 비하여 비교적 명확합니다. IAS 36은 일반적으로 FVLCD를 결정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거의 없고, 특히 분리할 수 없는 부채가 포함된 CGU에 대해 FVLCD를 회수가능가액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CGU가 처분될 때 구매자가 리스부채를 넘겨받을 것이 요구되는 경우, FVLCD 또한 부채를 고려할 것입니다. 이 경우, 의미있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부채의 장부 금액을 차감할 것입니다.

VIU - 기대현금흐름모형

일반적으로 사용권자산 및 관련 리스부채는 IAS 36 VIU 모형에서 고려됩니다. VIU를 테스트하는 CGU의 자산에는 사용권자산이 포함되며 리스부채는 제외됩니다. 기대현금흐름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리스부채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제외합니다;
- 기업의 자체 구조보다는 자본 구조의 시장 평가를 반영해야 하는 세전 할인율(일반적으로 세후 가중 평균 자본 비용(WACC)을 참조하여 추정)을 사용합니다.
- 리스 종료시 CGU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해당 리스 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현금 유출을 포함합니다. (손상평가를 받은 사용권자산은 기존의 리스계약만 반영하므로 대체를 반영하는 가장 실무적인 방법은 향후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현금 유출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 예상 미래 변동 리스료에 대한 현금 유출 및 리스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 및 소액자산 리스를 포함합니다.

VIU - 할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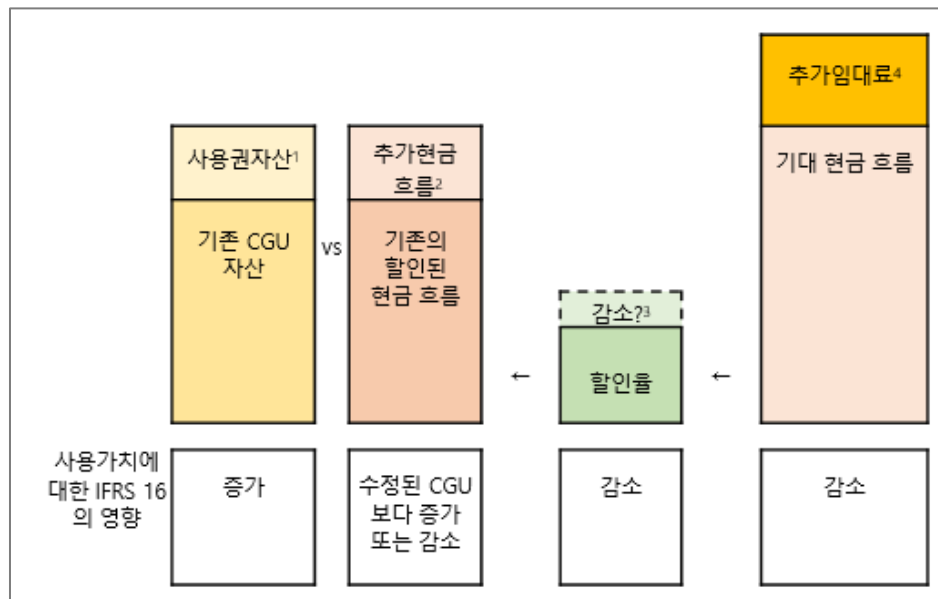
추정 미래 현금 흐름은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현재 시장의 평가와 추정 미래 현금 흐름에 조정하지 아니한 자산 또는 CGU의 특유한 위험을 모두 반영하는 세전 할인율로 할인됩니다. 이 할인율은 자산 또는 CGU의 자금 조달 방식과는 독립적입니다. 이 할인율은 비슷한 자산의 현행 시장거래에서 형성되는 내재이자율이나 용역잠재력 또는 위험의 측면에서 검토 대상 자산과 비슷한 하나의 자산(또는 자산의 포트폴리오)을 보유한 상장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이용하여 추정합니다 [IAS 36 문단 55-56].

결과적으로, 기업은 부채 비용과 자본 비용이 새로운 리스 회계의 영향을 반영하는 시장 기반 자본 구조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는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리스부채는 자본 구조의 일부로 간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사기업 집단에 기초한 가중평균자본비용은 IFRS 16의 영향을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IFRS 16에 따른 과거 리스부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IAS 17 주석 공시에 기초하는 방법 등으로 과거 자본 구조를 추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향후 IFRS 16을 채택한 후의 자본 구조 데이터가 이용 가능해질 때 조정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 가중평균자본비용은 기업의 자본 구조가 아니라 유사기업집단의 기업들이 대표하는 적절한 자본 구조의 시장 평가에 의존합니다. IFRS 16 적용이 유사기업 집단의 가중평균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과 개별 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유사기업 집단에 비해 개별 기업의 리스부채가 상대적으로 많거나 적은 경우 다를 수 있습니다.

VIU – 영향

IFRS 16의 적용 시 할인된 현금흐름으로 인한 VIU의 변동이 테스트중인 CGU 자산의 증가보다 낮은 경우 여유분("headroom")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영향은 아래 그림과 같이 증가된 기대 현금 흐름과 낮아진 할인율의 상호 작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용권자산을 포함하기 때문에 CGU에 자산이 증가합니다.
2. 리스 부채의 일부인 리스료가 제외되기 때문에 총 현금 흐름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영향은 리스기간이 기대내 용연수보다 짧은 리스자산을 대체하기 위한 현금 유출 증가로 인해 다소 상쇄될 수 있습니다.
3. 리스부채로 인해 부채비율이 높아져 할인율(가중평균자본비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4.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증가가 손상검사 대상 CGU 자산의 증가보다 작으면 여유분("headroom")이 감소하여 CGU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상황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손상이 존재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검토한 사용권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상은 해당 자산에 배부됩니다. 사용권자산이 CGU의 일부인 경우 CGU 전체의 손상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분하여야 합니다.

- CGU에 배분한 영업권
- CGU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 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그럼에도 개별 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중 가장 큰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 FVLCD(측정할 수 있는 경우)
- VIU(산정할 수 있는 경우)
- 0

특정 자산에 배분되지 않은 손상차손은 CGU내의 다른 자산에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재배분하여 인식합니다.

IFRS 16 과 IFRS 3의 상호작용

사업결합에 미치는 영향

IFRS 3의 측정 원칙은 취득자는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취득자가 리스이용자인 경우의 리스와 관련하여 IFRS 3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취득자가 리스이용자인 피취득자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에 취득한 리스가 새로운 리스인 것처럼 나머지 리스료의 현재가치에 기초하여 리스부채를 측정합니다. 리스기간 및 할인율은 리스 개시 시 수행된 IFRS 16 평가에 따라 피취득자가 사용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리스에 대한 취득자의 리스 회계처리와 피취득자의 별도재무제표에서의 회계처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사용권자산은 일반적으로 IAS 16에 따른 유형자산과 유사하게 기록되며 (2) IAS 16에 따른 자산은 사업결합 시 공정가치로 기록되지만 사용권자산은 IFRS 3의 일반적인 측정 원칙의 예외입니다.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는 인식된 리스부채와 같은 금액으로 사용권자산을 측정하되, 시장조건과 비교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한 리스 조건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합니다.

IFRS 3 역시 IFRS 16에서 허용하는 예외와 일관되게 사업결합에서 단기 또는 소액 리스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의 인식에 대한 예외를 제공합니다.

사업결합 여부 평가에 미치는 영향

2018년 10월 IASB는 수정된 사업의 정의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정의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취득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만, 조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일반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 외에도, 사업의 새로운 정의에서 중요한 변화는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이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선택적 집중 테스트를 도입한 것입니다. 만약 취득한 총자산의 공정가치의 대부분이 식별 가능한 단일 자산 또는 유사한 자산의 집합에 집중되어 있다면, 집중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자산은 집중테스트를 수행할 때 식별 가능한 자산의 정의를 충족합니다. 따라서 사용권자산은 집중테스트의 충족 여부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PwC Observation:

기업은 집중테스트 목적으로 여러 리스계약에서 발생하는 사용권자산들이 유사한 자산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각각이 개별 리스계약인 여러 사무실 건물을 리스하는 기업은 해당 자산이 집중테스트 목적으로 함께 그룹화되어야 하는 유사한 자산으로 간주되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IFRS 16과 IFRS 9의 상호작용

리스부채는 금융상품이지만 IFRS 7 과 IFRS 9의 특정 부분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리스부채에는 IFRS 7 공시와 관련된 사항(공정 가치 공시 제외), IFRS 9의 제거와 관련된 사항이 적용되며, 지정된 위험회피관계의 일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리스계약에 포함된 파생상품 또한 IFRS 9의 파생상품과 관련된 요구사항이 적용됩니다.

IAS 21 부분(7쪽 참조)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기업의 기능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리스부채는 외환 위험을 발생시키고 (위험회피회계가 없다면) 환산이 당기손익에 반영되어 변동성이 발생합니다. 일부 회사는 아래 요약된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모든 상황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리스에 내재된 이자율 위험의 회피와 확정 또는 예상 리스 및 연결실체내 회사 간 리스에 대한 외화위험의 회피도 고려됩니다.

위험회피대상으로서의 외화리스부채

외화금융부채와 마찬가지로 선도 계약, 스왑 또는 매입 옵션을 포함한 다양한 파생상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는 일반적으로 매년 동일합니다. 그러나 회계목적상 이러한 리스료는 리스부채가 상각 대출로 취급되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리스부채의 감소와 일치하도록 원금이 상각되는 원금감소형 외화 스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업은 이자의 지급이나 원금의 지급을 통해서 여전히 총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플랫스왑을 사용하여 일부는 원금에 대해 일부는 부채에 계상될 미래 외화이자에 대해 위험회피를 할 수 있습니다. 플랫스왑을 사용하는 경우 위험회피가 완전히 효과적이라면 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이 해당 보고기간의 원금 및 이자의 환산금액에 대응하고 미래이자 지급과 관련된 금액은 이연되도록 회계처리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금감소형이 아닌 스왑을 사용하려면 위험회피관계에 대해 보다 복잡한 회계처리가 필요하지만 원금감소형이 아닌 스왑 시장의 높은 유동성에 따른 효익을 고려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위험회피수단으로서의 외화리스부채

외화리스부채는 본질적으로 외화 금융 계약입니다. 이러한 부채는 적격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외화리스부채의 지정은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외화위험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EUR 기능 통화를 사용하는 지배기업은 USD를 사용하는 종속기업에 대한 순투자위험회피에 USD 리스부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순투자위험회피를 지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IFRIC 16은 그룹 구조 내에서 순투자위험회피를 지정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합니다. 또한, 리스부채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때 리스부채의 원금이 감소하는 상각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IFRS 16 과 IAS 12의 상호작용

많은 국가에서 법인세 과세는 회계처리를 따르거나 회계처리와 연계되는 반면, 리스와 관련된 과세제도가 회계기준과 상이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회계기준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다른 접근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IFRS 16이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국가별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세무상 공제되는 금액이 회계상 비용과 관계없이 계산되는 국가에서는 IFRS 16에 의한 새로운 회계상 자산/부채의 계상으로 새로운 일시적 차이가 생기고 이전에 기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를 인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IFRS 16에 따라 대부분의 리스(IAS 17에 따를 경우 금융리스)에 대해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시 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자산과 부채의 인식은 즉각적인 세금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리스료를 지급할 때 세무상 공제됩니다. IAS 12는 리스의 세효과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리스이용자에 대한 이연법인세회계에는 두 가지 주요 접근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접근법은 리스를 자산과 부채가 연계된 단일 거래로 간주하므로 약정 시점에는 순일시적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접근법은 자산과 부채를 개별적으로 고려하며, 이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일시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IAS 12 문단 15 및 24에 언급된 최초 인식 면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회계정책으로 선택하고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PwC Observation:

IFRS 해석위원회는 2005년 금융리스가 이연법인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금융리스에서 발생하는 자산과 부채에 IAS 12의 요건을 적용하는 데 다양한 실무가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문제는 법인세에 대한 IASB와 FASB의 단기

합치 프로젝트의 범위에 직접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지침을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이후 이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습니다. IASB는 2019년 7월에 IAS 12 문단 15와 24의 최초 인식 면제의 범위를 축소하여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와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모두 발생하는 거래에는 해당 면제가 적용되지 않게 하는 적용범위 개정 공개초안을 발행하였습니다.

IFRS 16과 그 외 IFRS 기준서의 상호작용

IAS 37 – 자산 복구 의무

자산을 인식할 때, 기업은 자산을 철거 및 제거하고 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추정을 원가에 가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산 복구 의무'로 알려진 조항은 IAS 37에 따라 처리됩니다. 일부 산업 (예: 채굴 산업)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실질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해결하기 위해 복구 활동을 수행할 때 기업은 리스자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IFRS 16 하에서 리스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재무상태표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발생시킵니다. 복구작업이 완료되면 IAS 37에 따른 자산복구의무를 줄이는 것이 적절합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기업의 부채를 '이중 계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장비를 리스한다고 해서 자산복구의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IFRS 16에 따른 리스부채가 계상되었다고 IAS 37 조항에 따른 자산복구의무를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PwC Observation:

이 회계처리는 매입한 자산에 대해 복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와 일관됩니다. 자산을 매입할 때 기업은 자산과 해당 자산과 관련된 지급 의무를 부채로 기록하지만, 복구활동을 수행할 때까지 IAS 37와 관련된 복구의무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IFRS 8 - 부문보고

많은 상황에서 IFRS 8에 따라 지역에 대한 기업 전체 수준의 정보를 공시할 때 사용권자산은 IFRS 8 문단 33에서 요구하는 비유동자산 공시에 포함될 것입니다. 대부분 유형의 비유동자산(사용권자산 포함)의 경우, 회사는 본사 소재지 국가 및 모든 외국에 위치한 비유동자산의 총계를 공시해야 합니다. 특정 외국에 소재하는 자산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자산금액을 별도로 공시해야 합니다.

보고부문별 자산과 부채의 총액이 최고경영의사결정자(CODM)에게 제공된다면 그러한 금액들도 보고해야 합니다. 비유동자산에 대한 추가공시는 IFRS 8 문단 24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가 CODM에 제공된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각 보고부문별로 공시해야 합니다. 이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IFRS 8 문단 28에 따라 보고부문의 자산 및 부채 합계에서 기업 전체 자산 및 부채로 조정할 때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IAS 21 – 환율변동효과

보고 기업이 기능 통화 이외의 통화로 리스계약을 체결할 경우, 결과적으로 사용권자산은 비화폐성자산이며 소유하고 있는 유형자산과 유사하게 재평가되지 않습니다. 외화리스와 관련된 리스부채는 화폐성이며, 마감환율을 사용하여 매 보고 기간마다 환산됩니다.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해외사업장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는 보고 기업의 표시통화로 환산해야 하며, 이로 인해 누적 해외사업환산손익(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wC Observation: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가 해외사업장에 존재하여 연결조정(즉, 해외사업장이 IFRS 16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으로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된 경우, 이러한 자산과 부채는 해외사업장의 자산 및 부채인 것처럼 외화환산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PwC는 IASB의 제·개정 프로젝트를 요약하여 전달하는 'In brief'와 상세한 실무적용이슈를 다루는 'In depth'를 통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최근 제·개정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 자료는 이를 번역한 것으로서 각 사례는 결정 시점 당시 유효한 국제회계기준서를 기초로 작성되어 그 이후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자료는 우리나라 감독기관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판단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2019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